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12. . (제 회)	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
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12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1월 1일부터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의 일부 품목번호, 품명이 개정되어 시행되므로,

별표인 협정관세율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되는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의 품목번호 및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13. ~ 12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신·구조문대비표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현 행	개 정 안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8까지,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, 별표 17의2부터 별표
17의7까지 및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
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71